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출국 해외생산시설 등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소금산업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신규 국가어업지도선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63명(5급 3명, 6급 9명, 7급 18명, 8급 21명, 9급 12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9명(6급 9명) 및 평택·당진항 1단계 배후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물학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4명(4급 1명,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4급 1명, 4·5급 3명)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의 관리운영직군 1명(7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의 관리운영직군 2명(9급 2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의 관리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각각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제22조제8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6조 제15항 및 제20항을 삭제한다.

별표 5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란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제25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별표 5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란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제25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군산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별표 5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란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제25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별표 5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란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제25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별표 16 중 총계 “598”을 “599”로, 일반직 계 “594”를 “595”로,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을 “12”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2”를 “31”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3”을 “56”으로,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97”을 “195”로, 행정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4”를 “6”으로, “해양수산연구사 1”을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1”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8”을 “6”으로 한다.

별표 17 중 총계 “604”를 “605”로, 일반직 계 “600”을 “601”로,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을 “12”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2”를 “31”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3”을 “56”으로,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08”을 “206”으로, 행정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4”를 “6”으로, “해양수산연구사 1”을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1”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8”을 “6”으로 한다.

별표 1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05”를 각각 “307”로,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79”를 “80”으로,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37”을 “38”로 한다.

별표 1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05”를 각각 “307”로,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78”을 “79”로,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37”을 “38”로 한다.

별표 2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83”을 각각 “946”으로,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42”를 “45”로,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68”을 “177”로, 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전산주사보 · 위생주사보 · 조리주사보 · 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35”를 “254”로, 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위생서기 · 조리서기 · 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19”를 “340”으로, 행정서기보 · 시설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위생서기보 · 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07”을 “119”로 하며, “선박

항해운영주사보 1”를 삭제한다.

별표 21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84”를 각각 “947”로,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45”를 “48”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65”를 “174”로,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47”을 “266”으로,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16”을 “337”로,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99”를 “111”로 하며, “선박항해운영주사보 1”를 삭제한다.

별표 2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54”를 각각 “1,264”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06”을 “415”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42”를 “343”으로 한다.

별표 2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58”을 각각 “1,268”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07”을 “416”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

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57”을 “358”로 한다.

별표 26 중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7”을 “8”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31 제12호 및 제17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0항 및 별표 31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5년 3월 31일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해운물류국) ① ~ ⑧ (생략)	제9조(해운물류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스마트해운물류터미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u>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u>
2. ~ 5. (생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① ~ ⑦ (생략)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24. (생략)	1. ~ 24. (현행과 같음)
<u><신 설></u>	25. <u>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⑨ ~ ⑮ (생략)	⑨ ~ ⑮ (현행과 같음)
제46조(한시정원) ①·② 삭제	제46조(한시정원)
③ ~ ⑭ (생략)	③ ~ ⑭ (현행과 같음)
⑮ <u>항생제 내성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u>	<u><삭 제></u>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
년 3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
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학원
에 두며, 별표 31의 정원 1명(연
구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 공
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①⑥ ~ ①⑨ (생 략)

②⑩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
년 4월 28일까지 별표 31에 따
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
다.

①⑥ ~ ①⑨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598</u>		<u>599</u>	+1
일반직 계	.		.		.	
	.		.		.	
			<u>594</u>		<u>595</u>	+1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	
			<u>11</u>		<u>12</u>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	
			<u>32</u>		<u>31</u>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		.	
	.		.		.	
			<u>53</u>		<u>56</u>	+3
	.		.		.	
	.		.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 ·	<u>197</u> · ·	<u>195</u> · ·	-2
행정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 ·	<u>4</u> · ·	<u>6</u> · ·	+2
사무운영서기보 ·	<u>8</u> ·	<u>6</u> ·	-2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604</u>	<u>605</u>	+1
	.		.	.	
	.		.	.	
일반직 계			<u>600</u>	<u>601</u>	+1
	.		.	.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1</u>	<u>12</u>	+1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32</u>	<u>31</u>	-1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53</u>	<u>56</u>	+3
	.		.	.	
	.		.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u>208</u>	<u>206</u>	-2
·	·	·	
·	·	·	
행정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4</u>	<u>6</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8</u>	<u>6</u>	-2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05</u>	<u>307</u>	+2
일반직 계	<u>305</u>	<u>307</u>	+2
·	·	·	
·	·	·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 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u>79</u>	<u>80</u>	+1
·	·	·	
·	·	·	
해양수산연구소 또는 환경연구소	<u>37</u>	<u>38</u>	+1
·	·	·	

신 · 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의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05</u>	<u>307</u>	+2
일반직 계	<u>305</u>	<u>307</u>	+2
·	·	·	
·	·	·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 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u>78</u>	<u>79</u>	+1
·	·	·	
·	·	·	
해양수산연구소 또는 환경연구소	<u>37</u>	<u>38</u>	+1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1]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총 계	<u>883</u>	<u>946</u>	+63
일반직 계	<u>883</u>	<u>946</u>	+63
·	·	·	
·	·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u>42</u>	<u>45</u>	+3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u>168</u>	<u>177</u>	+9

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 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방송 통신주사보 · 전산주사보 · 위생 주사보 · 조리주사보 · 간호주사 보 또는 운전주사보	<u>235</u>	<u>254</u>	+19
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위생서기 · 조리서기 · 간호서 기 또는 운전서기	<u>319</u>	<u>340</u>	+21
행정서기보 · 시설서기보 · 공업 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방송 통신서기보 · 위생서기보 · 조리 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107</u>	<u>119</u>	+12
<u>선박항해운영주사보</u> ·	<u>1</u> ·	<u><삭 제></u> ·	-1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1의2]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총 계	<u>884</u>	<u>947</u>	+63
일반직 계	<u>884</u>	<u>947</u>	+63
·	·	·	
·	·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u>45</u>	<u>48</u>	+3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u>165</u>	<u>174</u>	+9

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 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방송 통신주사보 · 전산주사보 · 위생 주사보 · 조리주사보 · 간호주사 보 또는 운전주사보	<u>247</u>	<u>266</u>	+19
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위생서기 · 조리서기 · 간호서 기 또는 운전서기	<u>316</u>	<u>337</u>	+21
행정서기보 · 시설서기보 · 공업 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방송 통신서기보 · 위생서기보 · 조리 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99</u>	<u>111</u>	+12
<u>선박항해운영주사보</u> ·	<u>1</u> ·	<u><삭 제></u> ·	-1

신 · 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4]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254</u>	<u>1,264</u>	+10
일반직 계	<u>1,254</u>	<u>1,264</u>	+10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환 경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406</u>	<u>415</u>	+9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 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 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 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342</u>	<u>343</u>	+1
·	·	·	
·	·	·	

신 · 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5]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258</u>	<u>1,268</u>	+10	
일반직	계			<u>1,258</u>	<u>1,268</u>	+10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환 경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407</u>	<u>416</u>	+9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 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 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 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357</u>	<u>358</u>	+1	
		·		·	·		
		·		·	·		

신 · 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6]

해양안전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7</u>	<u>8</u>	+1
<u>사무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